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2009. 1. 20 (화) 14:00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 이영복 의원의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9년 1월 5일

나. 회부일자 : 2009년 1월 6일

3. 제안 이유

-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충청북도 농촌전문인력 육성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영상 제기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관련 법의 조문명확화(안 제1조)

나. 기금의 일부 관리 주체 현실화 및 존속기한 명시(안 제3조)

다. 지원 기금운용 관련 일부 자구 수정(안 제4조)

라. 위원회 구성 명확화, 위촉직 위원의 추천 주체 및 추천인원수 명확화(안 제5조)

마. 직제개편에 따른 일부 직위 명칭변경(안 제5조, 안 제13조)

바. 기금관리 계획 및 결산주체의 명확화(안 제11조, 안 제14조)

## 5. 검토의견

-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는 농업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었으며, 동 조례의 개정안은 그동안 운용상 제기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타당함.
  
- 다만, 개정될 조례안이 향후 시행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은 없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